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언어권리의 침해에 관한 연구

신동일 · 심우진*

Abstract

Dongil, Shin & Woo-jin, Shim. 2013. 2. 28. **Investigating the cases of violating linguistic human rights in Korea.** *Bilingual Research* 51, 151-18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of linguistic human rights violations to minority groups in Korea. First of all, this research defines the concept of 'linguistic human rights' and explores its background. Then, three types of minority (foreign students,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 wives) were grouped. All the related newspaper articles, which appeared between 2003 and 2012, were collected over the Chosun Ilbo and Donga Ilbo Internet archives. Although this research cannot detect detailed cases against linguistic human rights, but afford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meaningfulness of linguistics human rights against the three minority groups. This article is concluded by proposing further research topics on linguistic diversity, ecological perspectives of language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Key words] linguistic minority(언어 소수자), linguistic human rights(언어인권), foreign students(외국인 유학생), foreign workers(외국인 노동자), immigrant wives(결혼이주여성)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후반까지 언어인권(linguistic human rights) 혹은 생득권에 관

* 제1저자: 신동일, 제2저자: 심우진

한 논제는 언어(교육) 관련 학술 단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고 특정 언어의 공적 사용이나 관련 정책은 정치적 힘이나 지배 계층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곤 했다(Wright, 2007). 언어는 정치사회적인 매개물로 인식되곤 해서 전통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시에 지배적인 정치사회적 권력 혹은 계층 간의 위계에 의해 조정된 것이다. Skutnabb-Kangas와 Phillipson(1994)에 따르면 언어에 관한 권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지역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소수자를 위한 배려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엔 언어학자의 참여는 미비했고 주로 변호사, 정치인, 사회활동가들이 의제를 부각시켰으며 그 이후 수십년 동안에 언어인권의 문제는 정치가, 인권변호사, 언어학자, 작가, 시민운동가 등 각종 인문사회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주제로 떠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언어학자의 참여는 매우 미비한 편이었다.

유색인종, 여성, 아동, 이민자, 학생 등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이 꾸준히 실행된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다문화·다언어공동체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권력언어(power language) 혹은 주류 언어공동체에 밀려 소수어로 전락한 언어를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배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창한 서구 지식사회의 모순적 역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 단일민족, 단일언어 정체성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언어 간의 공존, 혹은 고유 언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학술적 담론이 제대로 구축될 수 없었고(김하수, 조태린, 2008; 박휴용, 2005), 사회언어학의 논점을 해외에서 주로 수입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언어인권이 국내에서 제대로 다뤄지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영어를 지배적인 목표 학습언어로 선호해왔기 때문에 다중언어, 언어생태계, 혹은 언어 소수자와 그들의 언어권리에 관한 연구의 동기가 충분히 축적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외 연구의 동향에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을 학계가 주목

해야 한다(김선정, 2007; 김정은, 2006; 조항록, 2012).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의 세계화 지수 평가 등의 이유로 2010년 기준으로 83,842명이나 등록했는데(교육과학부, 2010) 2003년 등록 숫자인 약 12,000명에 비하면 수년 사이에 7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취업자도 약 791,000명이 되었고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25,117,000명) 중에서 무려 3.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2011년의 다문화 가정간의 혼인은 30,695건(통계청, 2011)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국제결혼 가정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위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배우자의 언어적 권리문제가 학계에서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피부색, 신체 구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제1언어 혹은 제2언어 때문에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신문매체를 통해 찾아보기 전에 국내 문헌 중심으로 언어의 생득적 권리, 즉 언어인권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혹은 실증적인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언어인권

인권을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평등과 자유의 자연법적 권리로 이해한다면 언어인권 역시 언어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Phillipson & Skutnabb-Kangas, 1997). 언어인권은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던지, 아동이던 성인이던지, 다수어를 사용하던 소수어를 사용하던 개인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주류 언어공동체 뿐 아니라 언어 소수자의 권리도 동일하게 존중하는 언어정책이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언어 간의

공존을 허락한다고 볼 수 있는데(박휴용, 2005), 개인마다 자신이 의사소통적으로 선호하는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그러한 언어적 선택과 사용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교육과 문화 활동도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언어에 관한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Wright, 2007).

국제자유권규약 제 27조를 보면 종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개인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분명 소수 언어 사용자를 위한 인권을 다루고 있다. 인권은 무권리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더라도 언어 소수자에게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할 때 도덕적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집단에게 일종의 특화된 쉼인데 한 집단의 언어를 보다 전체 공동체에서 공식적 언어 중 하나로 인정하는 것, 해당 언어문화를 보존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해당 언어를 통해 교육·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이 언어적 권리행사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Nickel, 2010, p. 213).

언어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국제적 문서 중 하나는 1966년 ‘언어권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ttee of Linguistic Rights)’에서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 집단, 이민자, 난민, 추방자 및 이산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자신의 언어공동체에 속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 1조에 명시되었다. 또한 1992년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지역어와 소수민족어에 관한 유럽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도 소수 이민자의 언어에 대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헌장의 서문에서는 소수자 집단의 언어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

서는 소수어가 손실되어서는 안 되며, 소수어를 공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Phillipson & Skutnabb-Kangas, 1997). 그리고 1992년 선언에서 소수자 개인이 모국어를 학습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면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다수어든 소수어든 개인의 모국어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언으로 발전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인권 운동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언어권리, 즉 공교육 기관에서 언어를 배우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kutnabb-Kangas, 2001). 특히 초중등 학교에서 개인이 모국어나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고 교육받을 권한을 갖지 못할 때 해당 언어의 사용자는 언어를 통한 정체성 구축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은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언어차별이 언어교재, 교육과정, 교수법, 그리고 크고 작은 언어정책 분야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권양이(2008)는 미국, 중국, 멕시코에서 온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 8명이 국내 환경에서 어떤 문제점을 감수해야 했는지 조사했다. 그들은 대학 행정부로부터 한국어 용어에 관한 설명도 없이 의료보험, 비자 등의 안내를 수용해야 했고 수강 신청, 수업 준비 등을 위한 사전교육의 기회도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대학 행정실을 방문해도 유학생 혹은 외국인을 배려하는 언어 경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Wright(2007)에 의하면, 언어의 권리를 둘로 나눌 수 있다. 즉, 고유한 언어를 사적인 공간에서 편견이나 박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어의 소극적(negative) 권리라고 하고, 공적인 공간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고유어로 교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권리를 언어의 적극적(positive) 권리라고 구분했다. 언어의 적극적 권리는 사실상 한국어만의 공용어인 국내 상황에서 학교나 기관 단위에서 논의되기 쉽지 않다. 언어의 권리가 사적인 관계 수준에서 혹은 정치적인 구호로 보장되었다고

해도 대부분 문서상의 동의일 뿐 개개인이 각자의 고유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거의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내 공교육 기관의 현실일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으로 주장하기 힘들며, 마찬가지로 한국인 학생들이 서구 지역에서 살거나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모국어 사용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과 한국인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특히 교육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는 언어인권이 제대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 역시 소극적 언어권리만을 의제로 다루곤 하는데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언어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에서도 언어와 언어 집단에 대한 언급을 제외했다. 또한 UN의 국가, 민족, 종교, 그리고 언어의 소수집단에 있는 자의 권리 선언에서도 대부분 의무를 부가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교육에서의 언어권리에 대한 내용은 다소 막연한 어휘만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언어권리에 대한 측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만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Skutnabb-Kangas, 2001).

국내 영어교육 현장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어로 배우는 영어의 능숙도가 초·중급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교육 공동체 안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허락하지 않는 영어만(English-only) 사용하게 하는 크고 작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빈번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더라도 자국어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의 TESOL(Teachers of English as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학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학교, 그리고 기타 단체에서 문서상으로만 공허한 약속을 할 뿐, 효율성이나 권력 지향성 때문에 언어적으로 약자인 공동체 구성원은 계속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문제를 좀 더 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Edwards, 2008,

p. 18). 예를 들면, 이윤과 공리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영어가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한국인 모두에게 모국어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영어사용자가 자신의 고유어 사용에 대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도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언어로 소통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언어에 관한 권리는 언어, 역사, 철학, 문화, 윤리, 정치, 경제, 법률, 복지, 사회, 교육 등의 여러 전문 영역이 협력하여 문제의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Pupavac, 2006). 예를 들면, 언어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배려, 심리적 치료, 적절한 교육내용 수준의 담론이 아닌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국가가 소수민족이나 토착민들에게 고유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매우 기본적인 언어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민족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Skutnabb-Kangas, 2001). 물론 이러한 문제는 언어나 민족의 경계가 경제와 정치적인 경계와 공존할 때 더욱 더 쉽게 발생한다. 갈등과 긴장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수언어 사용자에게 고유어 교육과 사용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3. 외국인 유학생,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모두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인식되고 있고(김하수, 조태린, 2008), 대중매체를 통해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국내 소수자의 언어권리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수자의 모국어 혹은 고유어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권력 언어를 강요하는 것은 감축형(subtractive) 언어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 소수자에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언어인권 시스템을 사용하고 강조

하는 것은 세계화된 자유시장, 혹은 권력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판다면 국제인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모두가 이해한다. 그러나 자본, 기술(technology), 공리, 혹은 효율성의 기준으로 특정 집단이 사용하거나 배우는 언어를 폄하하거나 매각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포용하면서 본 연구는 국내 언어소수자의 언어적 권리 침해 사례를 주목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중에 가장 주목할 문헌은 박휴용(2005)이 다룬 이주 노동자의 언어인권 문제이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의 언어인권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언어생태론적 관점에서 그들의 자아정체성 혹은 언어정체성을 언급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 단일국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의 언어인권 문제에 매우 둔감하다는 지적을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 언어인권의 실제적인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물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축적되었다. 김선남(2007)은 중소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그들이 느끼고 있는 문화적 이질성, 언어장벽과 같은 요인을 탐색했다. 그들의 학교 성적은 문화적 이해의 결핍, 쓰기 능력의 결핍의 변수에 영향을 받았고, 대학생활에 관한 만족도 역시 문화적 저항, 쓰기와 말하기의 능숙도 문제 때문에 높지 않은 편이었다. 김지훈, 이민경(2011)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행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문화적 체험 기회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했으나, 한국인의 폐쇄적 문화와 강한 민족의식, 언어적 제약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와 이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학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지원, 오승영, 이기영(2010)은 외국인 유학생 36명의 한국어 말하기활동에 관한 실태 연구를 실행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교육원에서 1

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어 능력시험 3, 4급을 통과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말하기 활동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말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말하기활동을 경험했다. 주희정(2010)은 서울 소재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에 입학하여 졸업했거나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영어강의, 팀프로젝트, 인턴십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했다. 그들 대부분은 영어강의에서 한국 학생의 영어능숙도 문제나 토론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특히 팀프로젝트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이 협동학습에 소외되는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했다. 백지숙(2011)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주로 자신의 가정을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초기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최병두, 박은경, 2012)는 점을 주목하였다. 경제적 효과, 노동실태 등과 같은 연구에서 점차로 정책, 복지, 인권, 지원단체 등의 연구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어, 정기선(1996)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적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적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긴장감, 혹은 작업장에서 업무내용의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지연(2004)은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 단체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내국인과의 문화적 이해관계 형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 형성에 지원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 특히 조직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웅 외 6인(2009)의 연구에서는 경기 지역 일부 이주노동

자 488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했다. 사회문화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목표언어 숙달과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자주 느끼고, 그로 인해 낮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인 혹은 인종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언술했다. 이정환(2005)은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를 주목하면서 동일 모국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친구 관계가 고용된 회사 안에서 어떻게 형성하는지 고찰하였다.

결혼 이주여성과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급증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물도 늘어나고 연구 분야 역시 출신 국가별로, 혹은 가정생활이나 지역사회 적응 등 좀 더 다양하게 탐색되었다(최병두, 박은경, 2012). 연구 분야는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과 원인, 부부 갈등, 결혼 생활의 묘사, 국제결혼 이주자의 적응과정,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진숙(2007)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김보라(2008)는 결혼 이주자들이 겪는 의사소통 문제와 자녀양육 혹은 교과 교육에 관한 부담감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부연하고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제시했다. 김순규, 이주재(2010)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언어능력을 중요한 변수로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 능숙도가 높으면 국내에서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운(2007)은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실행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면접 연구를 실시한 결과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는 입국한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었고 그러한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역시 이주여성에게 커다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었다.

4. 신문매체를 통한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신문매체에 등장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기사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언어적 권리의 침해를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문매체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그들의 언어적 삶을 실제 신문기사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토론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언어인권’,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의 기사를 검색한 내용이다. 다른 신문매체에 등장한 기사를 추가할 수도 있었지만 지면을 할애하는 만큼 내용적인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탐색적 속성의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사가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통계자료를 보고에서 2003년부터 집계된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검색기간을 2003년으로 설정하고 10년간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검색어 설정으로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사도 검색이 되었고, 실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사도 있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기사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기사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검색어를 ‘언어인권’ 등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한 건의 신문기사도 검색되지 않았지만 관련 기사를 부록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5. 토론

5.1.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기사분석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기사의 텍스트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데 단순히 개념적 재생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형적인 경로로 사회와 문화를 재구성하기도 한다(Fairclough, 1995).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담론이 국내 신문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따라 가고 있는지 주목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언어인권의 측면에서 그들의 생활과 학업 활동이 충분히 배려되고 존중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부록 1에서 기사가 정리된 것처럼 연구자들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기사를 모두 수집하고 검토했다. 조선일보의 독자투고 2건, 사설 1건, 동아일보의 사설 1건, 기고문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보도기사가 신문매체에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총 13건, 동아일보는 17건의 기사가 외국인 유학생을 다뤘다. 사회문화 영역의 새로운 변화나 사건이 신문매체의 담화적 흐름에 나타나는 것인데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이 2010년에 83,842명(교육과학기술부, 2010)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여년 동안 30여건의 기사가 실린 것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과 관련된 현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유학생의 날, 반값 등록금 등 주로 유학생의 생활 적응과 그에 관한 지원책을 보여주는 기사가 등장했다. 2005년 12월 5일의 기사는 “부산지역 대학들이 어렵게 유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 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순 문화 탐방이나 언어 강좌를 넘어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보도를 시작하지만, 기사 속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행사’, ‘한국인 재학생을 연결해 주는 글로벌 프렌즈’와 같이 유학생을 주류 한국인 집단과 분리시켜 바라보는 형식의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외대의 경우 167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60명의 학생이 ‘한국어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인지, 그리고 어느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을 어떤 언어로 돕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외했다.

2009년 11월 30일자 기사에서도 ‘유학생의 날’을 지정하여 유학생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모호한 어휘로 진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학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지역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다. 유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대전시민의 도움으로 잘 정착했다”는 인용이 등장했지만 ‘정착’, ‘적응’이라는 말의 포괄성을 이용해 유학생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일보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도하였지만, 대부분 외국인 학생의 유치에 집중해 있고, 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언어에 관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은 언급되어 않았고, 소수의 기사에서만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의, 중국어 표지판 등의 해결책을 언급했다. 또한 “언어가 낯선 곳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이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정해진 기간에 학위를 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기사내용을 실으면서도 언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거나 대안을 찾기 보다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고 문제를 단순화시켰다.

또한 개인의 권리, 언어권리에 관한 논의는 없고 유학생이 한국에 관해 나쁜 감정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게 될 사안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 2009년 10월 1일자 “외국인 유학생, 내 말 좀 들소”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에서는 영어 강의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가 소개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강의가 아닌 영어 강의를 듣기를 원한다고 해도 무작정 영어 강의를 늘릴 수는 없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학문을 수학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영어권 국가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유학하는 나라의 모국어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른다”는 내용을 실었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자신의 언어공동체에 속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언어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국제협약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외국인 학생이라도 어떤 관점에서든 자신의 고유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배려가 논의되어야 한다. 해당 기사의 투고자는 “돈 들여 외국 학생 초청해 한국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 영어를 쓰지 않는 한국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외국인 유학생을 이슬람인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사용에 대한 권리는 조금도 인정되지 않고,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나친 요구를 비난하고 있다.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외국인 유학생 집단은 한국인 학생의 영어말하기 능숙도 혹은 토론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협력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주취정, 2010). 조선일보 기사처럼 영어 강의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이나 언어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마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한 권리가 수용되는 듯한 제목이 발견되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다. 2012년 4월 25일 ‘경북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내년 설립’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기숙사, 취업지원센터, 문화교류 시설 등의 기술적인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기사는 언어 혼용 혹은 교육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생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문화

공간에서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개인의 내러티브는 없고 유학생을 지역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도구적 객체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2010년 1월 4일 ‘중국인 유학생-교환학생 배려... 전국대 32개 강좌 중국어 강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으로 많이 유입되자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중국어로 강의하는 전공 수업을 도입한 상황을 소개했다. 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나의 권력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 만 명이며 그 국적 또한 수십 여개에 달하지만, 그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듯 다수의 소수 언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국제화 기반의 교육에서도 효율성 혹은 공리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 언어, 단일 민족, 단일 국가의 정체성이 지나치게 강화된 주류 언어문화의 인식 체제도 무시할 수 없다. 2009년 11월 9일 기사에서는 한국이 57개국 중에서 다문화 포용성이 56위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 자료를 언급했는데 한국은 외국인 급증과 함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 부적응, 경제적 여건, 취업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소수자에 대해선 지면이 할애되지 않았고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문제와 관련한 문제만 언급했다. 신문매체는 외국인 유학생을 소수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좀 더 엄밀히 살펴보면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어 숙달도에 문제가 많다는 함축이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면 2010년 11월 5일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눈높이 맞추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어 강의를 늘려 외국인 학생들이 언어 불편 때문에 한국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해당 년도에 동남아 학생의 유입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어사용 환경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을 위협하는 내용도 신문매체에 등장했다. 2011년 11월 21일 ‘외국인 유학생 10만시대... 추악한 제노포비아. 왕따 시키는 캠퍼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외국인을 따돌리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다언어를 공존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고작 문화 적응만을 언급할 뿐이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로 인한 따돌림은 학교 수업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68% 왕따 경험’이라는 기사에서는 한국어에 서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학생들이 조별 모임이나 수업에서 소외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담당 교수가 전공필수 수업인데도 한국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중국인 학생에게 모두 나가라고 했으며 발표 순서에서 제외시키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F학점을 주기도 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언어 소수자의 집단 공동체와 언어 기반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은 학교 안팎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학생의 언어사용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영평, 장영숙(2011)이 보고한 해외 유입 소수자의 종류와 소수자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탈북자의 범주로 해외 유입 소수자 인구를 제한시키고 있다. 그리고 ‘식별가능성’으로 세 집단을 소수자로 분류했다. 즉, 외모, 언어, 습관 등에 따라 외관적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종적·문화적·차별적 대응과 시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기반을 둔다면 외국인 유학생도 ‘식별가능성’을 안고 있다.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소수자성의 기준점인데, 이주 노동자는 혹독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여성들이므로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탈북자 역시 출신 지역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집단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들을 소수자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수자성은 신문매체에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인권은 지면에 거의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입학은 허락받았지만 영어도 한국어도 능숙하지 못한, 심지어 중국어권에서 유학을 오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집단의 언어권리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문매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못했다.

5.2.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기사분석

조선일보 2003년 1월 1일 “한국인 착하지만 타민족과 함께 사는데 서툴러”라는 기사를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가 소개된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서툴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자 따귀를 맞았다는 내용이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내국인에게 힘들고 하기 싫은 일만 이주 노동자에게 시켰다는 내용도 실었다.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지만 그런 주종 관계를 당연하게 간주했다고 한다. 또 다른 노동자는 한국에서 영어가 잘 안 통한다고 진술했는데, 단순한 언어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교육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동냥으로 한국말을 배운 수준만으로 위험한 작업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신원식, 정연주(2010)의 연구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작업장에서 적응할 때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2004년 7월 20일 ‘외국인 근로자 중국, 동포의 집. 서울 구로구에 전용 병원 개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처럼 외국인 노동자 전용의원에 대한 기사도 다수 실렸다. 그러나 기사는 대부분 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감기에 걸렸어도 돈이 없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특히 한국에 오기 위해 이미

천만원 이상 빚을 진 외국인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개원했다고 보도했다. 그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는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휴용(2005)의 연구에서도 한 외국인 노동자가 약국에서 ‘펜잘’을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성의 없이 ‘벤졸’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고비용이 요구되는 병원에 가기도 어렵지만, 진료를 위한 원활한 언어 소통도 어려워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동아일보에서는 2010년 4월 24일 기사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속여서 퇴직금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소송을 걸어 승소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도했다. 소송 과정을 겪으며 해당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에 따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고 법원이나 관공서에 외국어 통역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의사소통 혹은 통역이 가능할 뿐 기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모국어에 기반을 둔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는 셈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인권의 문제는 신문매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도 못했다.

5.3.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기사분석

결혼 이주여성과 관련한 신문매체 내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신문기사는 이들의 출신 국가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저개발 국가로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또한 자녀를 가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2007년 3월 12일 ‘이주여성에게 통합교육 실시해야’라는 기사에서 한국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의사소통에 좌절감을 겪고 있던 이주 여성들을 소개했다. 한국어교육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하면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2008년 1월 26일 기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맛고, 친정 국가에서 보내온 옷과 음식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거나, 배우자인 이주여성조차도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한다는 상황을 보도했다. 또한 한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여성으로 비하되고 있다는 점도 보도했다. 정경운(2007)이 조사한 것처럼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은 언어 소통의 문제였고 해당 기사는 비인격적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소개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언어적 차별, 모국어 사용 혹은 기타 언어인권의 다양한 배려에 대한 지면은 할애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만 반복했었다.

전영평(2007), 김하수, 조태린(2008) 연구에서도 진술되었듯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분명 비집단화되어 있지만 문화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이다. 소수자를 수적인 규모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구별성’, 혹은 ‘차별성’ 등의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내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차별된 소수자임이 확실하다. 언어인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어에 대해 긍정적인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 모어가 소수자 언어인지 다수자 언어인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해 준다”(김하수, 조태린, 2008, p. 91)고 했는데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배우자는 이주여성의 모국어 사용과 긍정적 일체감에 위한 배려능력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과 학

습공동체 역시 단절시키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기사 중 빼 놓을 수 없는 내용이 이주여성의 자녀와 그들의 교육 문제이다. 조선일보 2008년 5월 5일 ‘이주여성 자녀들 100명 중 28명 왕따 경험’, ‘수업 시간엔 잘해도 집에 갔다 오면 까먹어’라는 기사에서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언어 문제로 단절되는 상황을 보도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맞춤법조차 모르며,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온 이주여성으로 한국어에 서툴다. 세 식구는 어떤 언어로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 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커 가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 능숙도가 낮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한국어에 익숙해지면 ‘엄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문화적 고유성을 부정한다. 엄마의 어눌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조차도 해당 학부모의 상담을 꺼리고 있으며, 이주여성은 전방위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하수, 조태린(2008)은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언어인권이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렇게 하려면 언어 소수자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집단적으로는 해당 언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권리 역시도 주어져야 한다(김하수, 조태린, 2008). Skutnabb-Kangas와 Bucak(1994)도 언어인권을 옹호함으로써 집단의 독립적 정체성이 인정되고, 모국어학습의 기회가 온전히 보장되며, 궁극적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사용할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언어인권은 국가의 개입이 허락될 사안이기도 한데 국가는 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자가 언어를 근거로 규정된 집단 사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고안할 수도 있다(김우성, 2005). 그리고 적은 숫자이긴 해도 신문매체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다루기도 했다. 동아일보 2009년 3월 11일 기사에서는 이

주여성과 이주근로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소개했다. 2006년에 개교하여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네팔, 모로코 등의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기반을 지키면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한국어수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공용어가 아니다. 각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특정 언어를 모르는 학생이 그 이유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차별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매체에는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입학할 수 없다는 학교의 방침, 한국어 능숙도가 부족한 것이 학생 개인이나 가정의 불화 문제라는 인식, 그리고 학교나 국가가 그러한 언어 기반의 권리 문제에 방관하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지면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언어에 관한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언어인권의 차별적인 대우를 지난 십여년 동안 게재된 신문 기사를 통해 탐색해보았다. 연구자들은 인종, 성, 사회경제적 계층 등 신체적인 차이나 정치경제적 이유로 국내에서 소수자로 규정된 그들이 언어 사용자로서 어떻게 주변인으로 비취지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후에 국내 상황에서 언어의 생득적 권리, 언어 소수자를 위한 언어정책, 혹은 언어 교육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언어 소수자로부터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언어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실증적 추후 연구안이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신문기사는 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 훈련을

빈번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신문매체 중 어디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국어 사용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의 능숙함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뿐 아니라 기초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도되었다.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제 2언어에 관한 공공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권리 문제는 여전히 신문매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이유로 제 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능숙도의 결핍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신문매체는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는 다뤘지만, 언어를 통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자로서의 권리와 기회, 또는 언어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신문매체 분석을 통해서 단일언어를 사용해왔고 단일민족과 단일국가의 정체성이 강한 국내의 경우 분명 다수의 언어를 공존시키거나 소수자의 고유어를 존중하고자 하는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유추된다. 세계어, 혹은 권력 언어로 인식되고 있는 영어, 혹은 제한적으로나마 중국어는 수용하고자 하면서도 기타 소수 언어와 소수언어 사용자는 다수자의 기준에서 무시되고, 차별되고, 걱정되고 있었다. 언어 소수자의 모국어 사용과 학습에 대한 권리는 그들의 고유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수준의 공용어로 인정하자는 사회정치적 논의를 떠나서도 소수자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언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인권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학술 현장에서도 확장되어 왔지만 언어의 권리에 관해서는 여전히 인색한 정치역사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박효용(2007)은 소수자와 소수자 언어를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제약 없이 그들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소수자의 언어 사용에 대

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하수, 조태린(2008)이 지적했듯이, 소수자의 언어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지출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었지만 다수자에 사회적 통념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집단도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 언어 소수자들이 1언어나 2언어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요원한 의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국내 사회에서의 소수어와 다수어의 공존에 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축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러 학교와 단체는 다문화·다언어 공동체의 유의미성을 어떻게 타당화시킬 수 있을까?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언어 소수자에게 고유어를 인정하고 제2언어로 사용할 한국어 능숙도의 교육 및 평가 모형을 좀 더 관용적으로 운용한다면 그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언어적 권리, 언어 정체성, 사회문화적 평등과 자유, 다원성을 허락한 문화자원에 대해 학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 질문을 감당하기 위한 기초적인 탐색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www.mest.go.kr/web/1105/ko/board/view.do?bbsId=147&boardSeq=14601> 에서 2012년 9월 12일에 검색함.
- 권양이(2008). 외국인유학생의 국내대학 초기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교육학 연구*, 14(1), 301-333.
- 김보라(2008). 국제결혼 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 김선남(2007).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9-46.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 김순규 · 이주재(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우성(2005). 라틴아메리카의 언어, 문화, 인권: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원주민 언어권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8(4), 5-37.
- 김정은(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30, 77-112.
- 김지훈 · 이민경(2011).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동기와 경험 연구. *동아연구*, 61, 73-101.
- 김하수 · 조태린(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79-104.
- 박휴용(2005).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언어인권에 대한 언어생태론적 고찰. *아세아 연구*, 48(4), 205-232.
- 백지숙(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신원식 · 정연주(2010).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인식. *사회과학연구*, 36(3), 213-232.
- 윤지원 · 오승영 · 이기영(2010).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말하기 실태 분석 연구. *시학과 언어학*, 19, 145-174.
- 이선웅, 김규상, 김태균, 류향우, 이미영, 원용림, 송윤희(2009). 경기지역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1(1), 76-86.
- 이정환(2005).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실증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7(3), 75-90.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전영평(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13(2), 107-131.
- 전영평 · 장임숙(2011). 해외유입소수자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전영평 외 (편),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pp. 353-381). 서울: 집문당.
- 정경운(2007).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체성 구성의 장애요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6(1), 97-139.
- 정기선(1996).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사회 심리적 적응. 1996년 한국 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발표문 요약집. 서울.
- 조향록(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0, 235-267.
- 주휘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

- 연구, 36, 135-159.
- 최병두·박은경(2012). 외국인 이주자의 기본활동 공간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84-132.
- 최지연(2004).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 지역의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전.
- 통계청(2012). 외국인 노동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4/index.board? bmode= read& aSeq=258230 에서 2012년 10월 30일에 검색함.
- 통계청(2011). 다문화혼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5/index.board? bmode=read&aSeq=259036 에서 2012년 10월 30일에 검색함.
- Edwards, J.(2008). The ecology of language: insight and illusion. A. Creese, P. Martin, and N. H.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ition, Volumn 9: Ecology of Language*, 15-26.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LLC.
- Fairclough, N.(2004). *대중매체 담화분석 [Media discourse]*, (이원표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전은 1995년에 출판)
- Nickel. W.(2010). *인권의 좌표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조국 역), 서울: 명인문화사. (원전은 2006년에 출판)
- Phillipson, R. & Skutnabb-Kangas, T.(1996). English Only Worldwide or Language Ecology? *TESOL QUARTERLY*, 30(3), 429-452.
- Phillipson, R. & Skutnabb-Kangas, T.(1997). Linguistic human rights and English in Europe. *World English*, 16(1), 27-43.
- Pupavac, V.(2006). Language Rights in Conflict and the Denial of Language as Communi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10(1), 61-78.
- Skutnabb-Kangas, T.(2001).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al) language right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7, 3-4, 201-129.
- Skutnabb-Kangas, T.(2008). A human rights perspective on language ecology. A. Creese, P. Martin, and N. H.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ition, Volumn 9: Ecology of Language*, 3-13.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LLC.
- Skutnabb-Kangas, T. & Bucak, S.(1994). Killing a mother tongue: how the Kurds are deprived of linguistic human right. Skutnabb-Kangas, T. & Phillipson, R.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Wlateral de Gruyter.
- Skutnabb-Kangas, T. & Phillipson, R.(1994). Linguistic human rights, past and present. Skutnabb-Kangas, T. & Phillipson, R.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Wlateral de Gruyter.

Wright, S.(2007). The right to speak one's own language: Reflections on theory and practice. *Language Policy*, 6, 203-224.

<부록 1>

<표 1> 조선일보 ‘외국인 유학생’ 기사

날짜	기사제목
2005.12.05	부산지역 대학 외국인 학생 급증 “한국 적응돕자” 지원 다양
2005.12.23	대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하여” 市·관내 8개大 협력해 전용기숙사 건립
2006.12.05	한국어 말하기대회서 중국 유학생 최우수상
2008.09.25	국내 ‘외국인 유학생’ 5만여 명. 중국학생 68% 제일 많아
2008.10.23	“학생회장 선거, 유학생 표에 달렸어요.” 학생식당에 중국 음식 조리사... 메뉴 바뀌
2009.09.28	외국인 유학생, 미안합니다.
2009.10.01	“외국인 유학생, 내 말 좀 듣소.”
2009.11.30	(충청) 매년 11월 27일 ‘유학생의 날’ 선포. 대전시 “지역 정착 돕고 면학분위기 조성하겠다”
2010.12.28	정부 약속 믿었던 외국인 유학생 짐싸게 만들면 안 돼
2011.06.27	일부 대학, 외국인 학생에 ‘만값 등록금’. 국내 대학들 “유학생 유치”최고 75%까지 깎아주거나 장학금 대폭 지급하기도
2011.11.09	외국인 유학생 다양해져. 영산대, 콩고 등과 협정 체결, 중국인 유학생 중심서 탈피해
2011.12.13	국내大 첫 외국인 유학생 회장
2012.09.15	외국인 유학생 알바비 떼먹는 사장님들. 대다수 ‘알바’ 불법 취업... 적발되면 비자취소 약속

<표 2> 동아일보 ‘외국인 유학생’ 기사

날짜	기사제목
2006.05.12	부산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
2006.11.29	외국학생 유치 사활 건 대학들...‘다국적 캠퍼스’로...
2007.05.26	서울대 외국인 학생들 ‘우정의 체육축제’
2007.10.16	아시아-아프리카 유학생 유치 고려대 ‘글로벌 장학금’ 신청
2008.04.07	경북대생-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만들어 우정 나눠
2009.06.22	<중국인 유학생 6만명 시대> 무리한 유치 부작용
2009.11.09	한국, 다문화 포용성 57국 중 56위
2010.01.04	중국인 유학생-교환학생 배려...건국대 32개강좌 중국어 강의
2010.11.05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눈높이 맞추기
2010.12.27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 등 돌릴라
2010.12.28	외국인 유학생 받아 反韓派 만들어서야

- 2011.11.21 <외국인 유학생 10만시대... 추악한 제노포비아> 왕따시키는 캠퍼스
- 2011.11.21 외국인 유학생 68% “왕따 경험”
- 2012.04.04 “외국인학생에게 쏟아졌던 관심... 어디 갔나요.”
- 2012.04.25 경북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내년 설립
- 2012.06.12 중국인 유학생 10만명 한국에 유치하자
- 2012.06.14 동북아 3국 유학생 유치경쟁 ‘맞춤형 교육’으로 공략해야

<표 3> 조선일보 ‘외국인 노동자’ 기사

날짜	기사제목
2003.01.01	외국인이 본 한국 “한국인 착하지만 타민족과 함께 사는데 서툴러”
2004.03.29	“외국인에 한국어 잘 가르치는 것도 세계화”
2004.07.20	외국인근로자·중국 동포의 집 서울 구로구에 전용병원 개원
2004.09.03	우리 곁의 연약한 羊들
2005.01.26	“인권존중하며 法집행할 것”
2005.10.26	文化主權의 보루 될 ‘문화다양성 협약’
2006.08.09	서귀포에 사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들 무더위 잇은 ‘한글 삼매경’
2007.09.06	한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UN 권고안
2008.07.10	한국말밖에 모르는 2세대들 추방되면 그곳서도 ‘이방인’
2008.11.18	외국인을 주민으로 보듬는 안산시 ‘외국인 인권조례’
2009.01.20	지원센터 만들고 이주여성 공무원 특채도
2009.08.07	‘외국인 200만명시대’ 내다보고 정책 리모델링해야
2009.09.23	더이상 ‘단일민족’ 아니다
2010.05.20	세계인의 날, 다문화 사회로 가자
2012.01.10	다문화 가정 자녀 37%가 왕따... ”엄마, 학교엔 제발 오지마”

<표 4> 동아일보 ‘외국인 노동자’ 기사

날짜	기사제목
2005.11.15	외국인정책, 佛 소요사태 교환삼기틀
2006.09.14	우리도 한때 외국인 노동자였다
2007.09.15	“당신들을 환영합니다...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
2008.11.17	‘그들’ 명들게 하며 병드는 ‘우리’
2009.02.05	다문화 현장-삼성전자 수원연구소
2009.06.03	서울 성북동 합숙 교육기관 베들레헴 어린이집
2009.07.01	‘법률사각지대 탈출’ 지원 모색
2009.12.10	10년뒤 웃으려면... 지금부터 다양성 관리를
2010.04.24	불법체류 악용 퇴직금 떼먹어... ‘270만원 전쟁’ 4년만에 승리

- 2010.07.21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 ‘다름’ 그리고 ‘소통’
- 2010.11.09 ‘다문화도시’ 경기 안산 외국인조사 두 표정
- 2010.12.11 다문화가족 위해 방송에 다언어자막을
- 2012.03.01 “오바마 대통령처럼 아픈 달고 꿈 키우렴”

<표 5> 조선일보 ‘결혼 이주여성’ 기사

날짜	기사제목
2007.03.12	이주여성에게 통합교육 실시해야
2007.05.01	“시어머니 말 한마디 거스르지 않고 음식 가르쳐주면 어찌나 잘 하는지...”
2008.01.26	이주여성 배우자 폭행 시달려 중개업체에 ‘바뀌달라’요구도
2008.04.14	淸州출입국사무소, 이주여성 대상적응 돕기 위한 외국어 교실 운영
2008.05.05	이주여성 자녀들, 100명 중 28명 ‘왕따’ 경험 ” 수업 시간엔 잘 해도 집에 갔다 오면 까먹어 ”
2008.05.05	말 안통하는 엄마... 유치원도 못 가는데...
2010.03.08	결혼이주여성 따라온 2세대, 학교 부적응 심각 언어·문화장벽 혼란 대부분이 ‘중도 이탈’
2010.10.28	외국인 새댁 아닌 ‘옆집 새댁’일 뿐... 무시도 편견도 동정도 금물
2011.03.22	“일자리 구하기와 아이들 교육지원이 제일 절실해요”
2011.05.23	봉사하고 장사하고... 이주여성들이 몽쳤다
2012.04.10	10년 후 미래 핵심과제 12가지_ ②다문화

<표 6> 동아일보 ‘결혼 이주여성’ 기사

날짜	기사제목
2007.07.31	광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만든다
2007.08.24	[전북]국제결혼 이주여성28% 요건 갖추고도 한국국적 취득 못해
2008.01.02	[새 이웃사촌 ‘다문화 가정’]<上>급증하는 다문화 가정
2008.01.09	[새 이웃사촌 ‘다문화 가정’]<中>이주여성 적응하기
2008.01.16	[새 이웃사촌 ‘다문화 가정’]<下>이주여성 지원정책 문제없나
2009.02.03	충남도 외국인 며느리 2년새 2.5배 급증
2009.02.27	미용사 겸합한 이주여성 김엘레나 씨 “언어장벽 뚫었어요”
2009.04.22	주한 외국인의 험겨운 병원 가기
2009.06.23	다문화가족 종합대책 발표
2010.01.25	“한국어 배우며 매운 시집살이 고충도 나뉘요”
2010.05.17	전북에 ‘언어권별 이주여성 인재은행’
2010.06.22	“다문화는 이제 한국 문화... 소통 힘써야”

- 2010.07.23 [다문화사회의 동반자, 이주여성]<中>아내나라 문화 모르는 남편
들
- 2010.11.23 “한국인-외국인 쌍방향 다문화교육 필요”
- 2010.12.11 다문화가족 위해 방송에 다언어자막을
- 2011.03.04 [달라도 다함께/1부]<5>아직도 높은 행정의 벽
- 2011.05.30 [달라도 다함께/2부 다문화 청소년, 세계를 꿈꾼다]“2개국어 능통
한 글로벌 인재 꿈 키워줘야”
- 2011.06.13 [달라도 다함께/2부 다문화 청소년, 세계를 꿈꾼다]<4> 한국어-모
국어 교육의 현주소
- 2011.06.24 “한국 정착 힘들었는데… 토요학교 고마워요”
- 2012.08.07 배우자 범죄전과 모르고 결혼하는 이주여성들
-

신동일(Dongil Shin)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번호: 02-820-5098

전자우편: shin@cau.ac.kr

심우진(Shim woo-jin)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번호: 02-820-5095

전자우편: shim@cau.ac.kr

접수일자: 2012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4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6일